

울산지방법원 2024. 12. 13 선고 2023가단1289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

담당변호사 김익환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낙구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3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5,912,200원, 원고 B에게 15,0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 지분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1. 6. 30.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. 7. 9. 접수 제98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E의 자녀들이고, 피고 D은 피고 C의 처남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지분은 E이 소유하다가 2014. 2. 12.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피고 C의 배우자 F은 2000. 5. 3. 울산 중구 G 및 지상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, 2014. 5. 8.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원고 A는 2008. 2. 27.경에, 원고 B은 2008. 4. 8.경에 각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.

마. 피고 C은 2021. 7. 9.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21. 6. 30.자 매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11,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 A의 청구(불인정)

1)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정산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○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35,000,000원

- 원고 A의 전세보증금 10,000,000원

- 이 사건 건물 1층 세입자 전세보증금 대납금 20,000,000원

- 도시가스 인입비 등 5,000,000원

○ 원고 A가 대납한 피고 C의 채무

- H조합 대출금 이자 37,250,000원

- 국세 19,582,200원

- I에 대한 대출금 이자 10,080,000원

○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공사대금 합계 29,000,000원에서 원고 B의 전세보증금 15,000,000원을 공제한 잔액 14,000,000원

2) 원고 A는, 피고 C와 사이에 위 각 금원을 위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. 그런데 갑 제13, 20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논의가 있었던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,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주장하는 위 정산금 항목을 피고 C이 원고 A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(위 원고가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 C 또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·수익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이 보일 뿐이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. 원고 B의 청구(불인정)

원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1,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

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,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 C의 무자력이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4. 결 론

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미경

별지